

의안번호	제 702 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이상식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4월 13일

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상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0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4월 13일
발의자 : 이상식, 연종석, 송미애
윤남진, 이상정, 박우양
임동현

1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 점포가 운집한 일대를 '골목형상점가'로 지정해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(20.8.12시행됨)에 따라 이를 조례상의 지원 대상에 반영하고자 함
-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완

2. 주요내용

-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신설(안 제2조제2호의2)

3. 조례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1. 3. 31. ~ 2021. 4. 10. (10일)
-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와 협의함
-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”를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”로 한다.

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전통시장 또는 상점가”를 “전통시장 또는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”를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의”를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의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”를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시설현대화사업
2. 경영현대화사업

제5조제2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<u>전통시장 및 상점가</u>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 ----- -----<u>전통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</u>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u>(신설)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“지원대상”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<u>전통시장 또는 상점가</u>를 말한다.</p> <p>5. “시설현대화사업”이란 <u>전통시장 및 상점가</u>의 고객, 매출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하는 법 제20조제1항 <u>각호</u>의 사업을 말한다.</p> <p>6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2의2. “<u>골목형상점가</u>”란 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<u>골목형상점가</u>를 말한다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<u>전통시장 또는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</u>-----.</p> <p>5. -----<u>전통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</u>----- ----- -----<u>각 호</u>----- -----.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충청북도 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<u>전통 시장 및 상점가의</u>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<u>전통 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의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지원사업) 도지사는 <u>전통시장 및 상점가의</u>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(신설)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4조(지원사업) -----<u>전통시장 및 상점가·골목형상점가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시설현대화사업</u></p> <p>2. <u>경영현대화사업</u></p> <p>3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
<p>제5조(업무의 위탁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」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5조(업무의 위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필요한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상점가”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 한다.
- 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□ 소상공인기본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